



## 산학협력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공포

1. 관련: 운영기획실-44203(2024.6.10.)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3.12.28., ‘24.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현행 연구비 집행기준 등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 (상위법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표 2]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함을 명시(제5조제2항제2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를 거쳤고,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에만 회의비 중 식비 허용함을 명시(제10조제2항제3호가목)
  - (출장비)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한 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계상을 허용(제10조제2항제4호나목)
  - (보안수당) 수당 지급범위에 연구근접지원인력을 포함(제12조)
- (여비지급구분) 「서울대학교 여비규정」(‘24.2.29.) [별표1] 개정에 따라 “**첨단융합학부장**”을 ‘제2호 가목’ 적용 대상자로 명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출장신청(명령) 절차 현행화(제10조 [표 9])
- [별표 1] 및 [별표 2]
  -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 반영 및 현행화를 위한 변경

□ 시행일: 2024. 6. 11.(화)

- 붙임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기준 전문 1부.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1부.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 1부.  
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 신규조문 대비표 1부. 끝.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수신자 교육기구(학과(부)), 연구소, 국가지원연구센터,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부속시설, 연구 정책과장, 연구처연구지원과장, 연구윤리팀장,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실장, 산학협력단 지식 재산전략실장, 산학협력단 연건분원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주임 김혜령

팀장 현혜경

부장 도희현

실장

2024.6.11.

전결

박준철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실-44810 (2024.6.11.)

접수 자연과학대학-27300 (2024.06.12.)

우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942동(연구공원 내) 5층 /

전화 02-880-1126

전송 02-888-2029

/kimhr@snu.ac.kr

/ 공개